제779회 신설·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1	건설기계 부품의 인증에 관한 규정 개정안(국토교통부)	1.건설기계 부품 안전성 기준(강화)부품인증 대상 항목인 타워크레인의 마스트, 지브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직강도, 굽힘강도 등의 안전성 기준을 정하고 시험조건을 규정함	1.비중요
2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관세청)	1.특송화물의 장치기간(강화) 장치기간 단축 : 後 2월	1.비중요
3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환경부)	1.위반사실의 공표(신설) o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 -위반행위의 내용, 위반행위를 한 자,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 o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와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1.비중요
4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안전성·유효성 문제 원자재 사용 의료기기 추가(강화) 안전성·유효성 문제 원자재(프탈레이트) 사용 수액세트 및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는 제조 또는 수입 허가(인증) 금지	1.비중요 2.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2.공동책임대상 추가(신설) 환자맞춤형 의료기기는 제조(수입)업자와 담당 의사의 공동 책임하에 제조(수입)·사용	
5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개정안 (행정안전부)	1.자율형건물번호판의 관리 등(신설) 지자체장이 자율형 건물번호판 규격, 표기사항에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설치자인 건물 소유자 등에게 정정하도록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 받은 소유자 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정하여 통보하도록 함	1.비중요
6	신용협동조합법시행규칙 개정안 (금융위원회)	1.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신설)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	1.비중요
7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수출 목적의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 등 요건 강화(강화) 감염병 대유행 등에 식약처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품목은 수출용 제품이라도 기술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1.비중요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금융위원회)	1.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차단 관련 필요사항 규정(신설) 내부통제기준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 및 지원부서를 설치하고, 내부통제기준 주요 내용을 공시하도록 함	1.비중요
9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토교통부)	1.교통수단안전점검 실시 대상 확대(강화)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교통수단안전점검의 실시 대상을 확대(중상 3명 -> 중상 2명)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환경부)	1.1회용 컵 보증금 부과대상 추가 (안 제17조 신설)(신설) 1회용 종이·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여 음료류(차, 커피, 과일음료, 탄산음료 등)를 판매하는 사업자 중에서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규정 마련 2.빈용기컵보증금제도 도입에 따라 신설되는 자원순환보증금 관리센터 설립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안 제17조의2)(신설) 빈용기컵보증금제도 도입에 따라 신설되는 자원순환보증금 관리센터 설립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 3.플라스틱 제조업자를 재생원료 사용의무대상에 추가(안 제32조, 제33조)(강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생원료 사용의무가 있는 지정사업자 대상에 기존 종이, 유리, 철 3종 외에 플라스틱 제조업자 추가 4.규제대상 1회용품 품목 추가(신설)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및 우산 비닐 사용규제를 위해 해당 품목을 규제대상 1회용품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규제 해당 5.재활용의무대상 제품 품목에 발광다이오드조명(LED)	1.중요 2.비중요 3.비중요 4.비중요 5.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추가 (안 제18조, 별표6)(강화) 기존 형광등을 대체하여 사용량이 증가하는 발광다이오드 조명(전구형, 직관형, 평판형)을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에 포함(생산자에게 일정비율 이상 재활용할 의무 부여)	